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2-20

[redacted]고 등 법 원

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9누11671 취득세부과처분취소
원고, 항소인	1. A
	2. B
	[redacted]
	[redacted]
피고, 피항소인	1. [redacted]도 [redacted]시장
	2. [redacted]군수
제 1 심 판 결	[redacted]지방법원 2019. 7. 11. 선고 2019구합62674 판결
변 론 종 결	2019. 9. 18.
판 결 선 고	2019. 10. 23.

주 문

1.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2-20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 [redacted]도 [redacted]시장이 2018. 7. 24. 원고 A에 대하여 한, 피고 [redacted]군수가 2018. 8. 21. 원고 B에 대하여 한 각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.

이 유

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
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이광만

판사 안재훈

판사 허 승